

1 사법시험 폐지의 당위성

【**법령에 의거**】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05.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충분한 논의의 결과**】 사법시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95.01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도입
법전원 도입 추진

1999.0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1999.12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

2003.10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2005.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7.07
국회 통과
[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가권 20명]

【**국민과의 약속**】 지난 7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믿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도 금해졌습니다.
법전원이 설치된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며,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2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

Q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인가요?

A ■ 사법시험은 수험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합격률이 겨우 2.94%에 불과합니다.

- 1981~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졸업, 재학, 퇴학) 학력 소지자는 0.1%(19명)
- 2006~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0.05%(3명)
※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만 사법고시 응시 가능, 제1차 시험에서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요구

A ■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고시원 비용 등의 생활비 외에도 월 14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그 보완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 가난한 사람도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적으로 선발인원과 장학금을 보장합니다.

-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 및 장애인 등을 매년 입학정원의 6.25%(131명) 선발해
이들에게는 전액장학금 지급(총 894명 선발('09~15년): 재학생 444명 등, 변호사 334명)

2. 타 대학원보다 실질등록금 평균이 제일 낮습니다.

-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수입의 358억원(37.6%) 장학금 지급
- 전체 학생의 70.6%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 지급
- 법전원 연간 실질등록금 최저 4,013천원 평균 8,944천원 최고 13,998천원
- 경영 평균 16,989천원 → 의학 평균 12,294천원 → 법학 평균 8,944천원
- 법학 평균 등록금이 경영의 50% 수준, 의학의 70% 수준
- 미국 평균 50,000달러(한화 5,700만원) 일본 평균 150~250만엔(한화 1,520만원~2,500만원)...

3. 법전원생은 고루 분포되어 있고, 분위순 경제적 사정만 고려해서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중 70.6%가 장학금 혜택)

구 분	기초수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 타
인 원	262	661	281	208	182	166	127	147	210	247	441	730
비 율	4.4	10.9	4.7	3.5	3.0	2.7	2.1	2.5	3.5	4.1	7.3	12.1

※ 법전원에서는 소득분위 6분위(1,887명)까지 50% 이상 장학금 지급, 그 이하 소득분위도 차등 장학금 지급



3 사법시험 존치 시 예상되는 폐해

【**변호사의
이원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이원화되어, 사법시스템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것입니다.

【**학부교육의
황폐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돼
각자의 전공공부에 소홀, 결국
학부교육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 폐지의 원인이었던 '고시망국론' 이 재현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막을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전원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법전원 수업을 등한시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자퇴로 인한 폐강 과목 증가, 법전원 설립
취지인 국제화, 특성화, 전문 법조인 양성 취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소수대학
출신의 독점**】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대학에서만 합격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고시낭인의
발생**】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낭인의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

[법학교육의 정상화]

■ 법전원 도입으로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던 법학공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지식습득



지식습득

+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폐 → 타전공 학부교육이 정상화

[출신대학의 확대]

■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2.5배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40.6개 → 법전원 입학자 출신대학 102.4개

■ 지방대학 출신의 법조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학 출신 12.06% → 법전원 입학자 중 지방대학 출신 19.6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0명 인제 선발

[다양한 학위취득 출신 증가]

■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입학한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위의 학위를 받고 입학한 자 20명

→ 법전원에 입학한 사람은 57명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 배출]

■ 비법학 전공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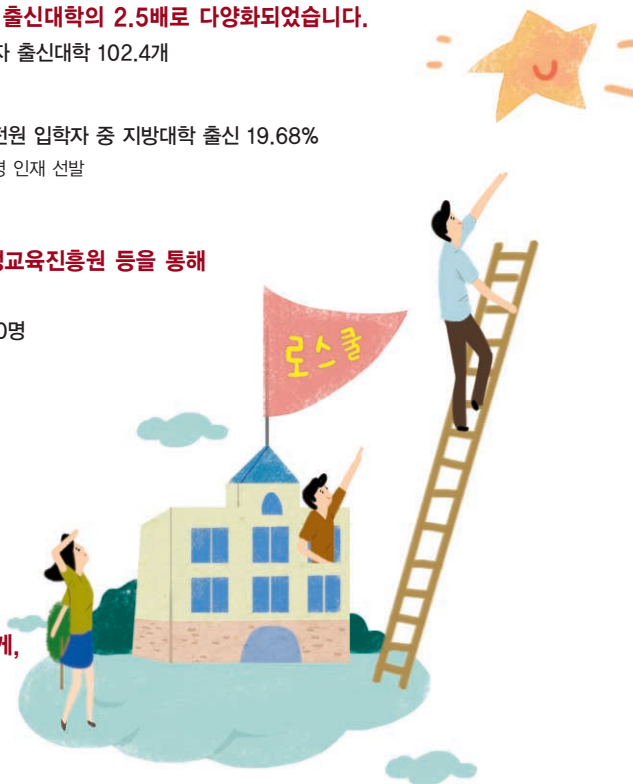
→ 법전원 입학자 중 비법학 출신 56.0%

[직역진출의 다양화]

■ 송무시장 위주로 진출하던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19.5%

→ 법전원 졸업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29.5%



5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

1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방통대 법전원 개원 제안

- 주간 법전원의 절반 수준인 등록금
-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입학 전형

2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 신체적,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약 6.25%(13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입학정원의 10%(2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서 등록금을 인하하겠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등록금 인하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을 조정을 통한 재원과 법전원 고비용 구조 규제완화를 통한 자원 확보를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법전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적인 제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04515)
전화 02-752-2037 홈페이지 <http://info.leet.or.kr>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2017년에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